

창간기념 3대특집 III
민주당의 정책청사진

치안회복의 지름길 특별법 제정

인신매매와 성폭력을 중심으로

민생치안 부재의 시대

연일 보도되는 살인강도, 어린이와 부녀자 납치, 인신매매, 성폭행, 마약밀매, 방화 등의 범죄가 극에 달하여 국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다. 외국 폭력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감과 불안감 그리고 대처불능의 무력감 속에 젖어 있다.

6공정부는 90년말에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단서조차 잡지 못한 채 미궁에 빠져 있고, 대구의 개구리소년들을 비롯해서 매일 도시 한복판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그 수가 10만이 넘는다고 한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나라에서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직장여성에서 주부까지, 두살 난 유아에서 할머니까지 직업도 소속도 나이도 상관없이 속수무책으로 실종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실종된 부녀자의 90% 이상이 무허가 퇴폐향락업소에 강제구금되어 있다고들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찰의 실태를 볼 때 경찰이 실종자를 찾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관할경찰서와 그 지역 무허가 유흥업소의 공생관계는 알려져 있는 비밀인지 오래이다. 이런 현실에서 실종자를 찾는 일은 가족들이 할 수밖에 없으며 그 가족들의 노력은 눈물겹기만 하다. 최근 그들은 '실종자 가족협의회'를 만들고 자원 특공대를 조직하여 퇴폐향락업소를 직접 뒤져 70여명의 여성들을 구해내는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은 뒷짐지고 바라보고만 있고, 실종자의 가족들이 사탕가 뒷골목을 뒤흔들면서 그들의 가족을 찾아 헤매는 이 비극적인 희극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할까? 인구 4천만에 실종자가 10만이라는 숫자는 그것이 단순가출이든 범죄에 의한 실종이든 6공정부의 치안능력은 이미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하나의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성폭력의 문제는 그 관련보도가 신문에 게재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일상화되었다. 유아에서 할머니까지 무차별적으로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치안부재, 도덕부재의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참으로 막막하고 암담하다.

민생치안 부재의 현실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여성들과 어린이이다.

사회구조가 인신매매 부른다

인신매매와 성폭력은 여성의 성을 상품으로 사고 파는 이른바 매매춘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공급은 수요를 낳고, 수요는 더욱 확대된 공급을 요구한다. 80년대 이후 향락산업의 급성장과 향락문화의 확산은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남성고객의 수요를 급증시켰고, 그 수요의 증가는 급기야 부녀자 납치와 인신매매라는 가공할 범죄를 양산시키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인신매매가 급증하게 된 데는 왜곡된 정치·경제·사회정책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

첫째, 60년대 이후 대외 의존적인 산업화

정책으로 농촌경제가 파탄되자 농촌의 딸들이 도시 제조업부문의 노동자로 대거 유입되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고용정책으로 여성의 취업이 저임금의 제조업, 하청, 행상, 파출부 등의 열등한 위치에 제한됨으로써 여성인력은 70년대 들어서면서 접객서비스업 부문에 많이 흘러들어가게 되었다. 89년 내무부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17만개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종업원 수가 40만명이었으나 최근 경찰청은 65만명의 여성이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할 정도로 증가했다. 더욱 가공할 사실은 40만중 15%인 6만명이 자기의 의사와는 달리 강요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종업원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서 기업의 휴폐업과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에 의해 대량 감원된 여성인력이 갈 곳은 3차산업 분야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실업문제가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생산직 인력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몰락하게 되어 향락산업의 이상비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즉 향락산업은 자본회전이 빠르고, 투자비용이 적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어 향락산업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셋째, 향락산업의 급격한 번창은 특히, 80년대 이후 정부의 부정부패로 인한 청탁과 향응의 관행이 늘어난 데 있다. 최근에 국세청에 신고된 재벌기업들의 접대비가 1조 3천여억원이며 85년도의 4천48억,

그리고 87년도에는 6천6백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은행측의 추산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향락산업에 투입되는 재원이며 이 돈이 인신매매의 자본이 되었던 것이다. 고급 향락업소의 주요 고객들은 고급공무원과 회사간부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위 지도층 인사들의 향락 문화는 사회전체적으로 퍼져 하루 몇 천원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싸구려 향락업소에 이르기까지 계층의 선호도에 따라 다층화되어 확산되었다.

네째, 비민주적 정권이 국민의 민주적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소위 추진하고

다.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민간인을 대량 살상한 사건이나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성고문이나 고문치사 사건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인명경시 풍조와 여성비하 풍조를 유포시켰다. 인신매매의 경우, 그 경로가 어떻든 간에 피해자들은 성적인 폭행과 마약투입 등으로 인격적 황폐화를 겪어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만들기도 했다. 인신매매 범죄집단이나 그 수요자들에게 있어서 피해여성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일 뿐이다.

여섯째, 성폭력 문제의 경우는 문화적 요인이 보다 크게 작용한다고 보아야할

.....

“성폭행의 피해여성들이 2중, 3중의 사회적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남성들에게는 영웅호색이라는 말로 미화되고 여성들에게는 흠이 있는 여자로 낙인찍는 성의 이중규범 때문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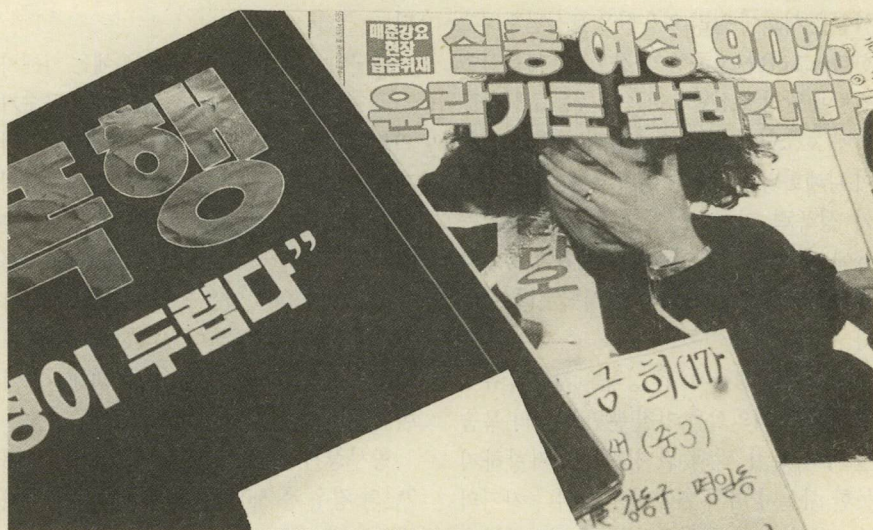
있는 3S(sports, sex, screen)정책 또한 향락 문화, 향락산업의 대중화를 촉발시켰다. 주택가 깊숙이 침투한 퇴폐유흥업소, 디스코장, 소형영화관, 카페, 여관, 사우나 등에 의해, 마치 한 잔의 음료수를 사고 팔듯이 손쉽게 여성의 성을 상품화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향락문화의 대중화에 따라 여성은 단순히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마저 무너져버렸다.

다섯째, 정부 스스로가 성폭력 범죄자나 범죄집단을 규제할 도덕성을 상실한 것도 인신매매와 성폭력 증가의 커다란 원인이

것이다. 즉 여성들에게만 강요되어온 순결이테올로기로 인하여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그 후유증이 앞으로의 생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그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데서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 지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암적 요소인 인신매매와 성폭력범죄의 확산에 따라 여성들이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유례없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94%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했으며 「여성신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폭력은 여성스트레스의 1위라고 한다.



• 민생치안 부재의 현실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여성들과 어린이이다. 인간존재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범죄, 성폭력. 특별법 등 대책이 시급하다.

여성들은 한적한 곳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쳤을 때(96.9%), 밤에 혼자 택시를 탈 때(92.1%), 밤에 혼자 외출할 때(91.8%), 혼자 극장이나 공원에 갈 때(82.0%), 여자들끼리만 여행이나 등산을 할 때(76.8%), 어두워진 후에 혼자 집에 있을 때(76.6%) 매우 불안함을 느낀다고 했으며, 심지어는 낮에 혼자 집에 있을 때에도 46.7%의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꼈다 한다. 사회 전반에 만연된 성폭력의 위협때문에 여성들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출근 길의 버스나 전철에서부터, 직장에 이르기까지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지대는 한 곳도 없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1990년)에 의하면 여성들이 일생동안 당한 성폭력의 유형은 가벼운 추행(76.4%), 성기노출(74.5%), 성적 희롱(48.6%), 음란 전화(46.3%),

심한 추행(23.7%), 강간 미수(14.1%), 강간(7.7%)이며 사회통념상 성폭력으로 인지되지 않고 있는 아내강간의 경우는 기혼자의 67.3%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어린이 강간은 심각한 문제로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임상성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당한 성폭행은 11.5%나 되며 이들중의 15.7%가 국민학생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3세의 유아도 끼여있어 놀랍다. 최근 9살 때 당한 성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 가해자를 살해한 김부남씨 사건을 보더라도 성폭력은 인간존재 그 자체를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성폭력은 인간존재 말살하는 범죄

일반적인 폭력의 경우 피해자들은 그

사실을 사회에 알려 억울함을 보상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성폭행의 경우 그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 보상받으려는 행동은 고사하고 법에 호소하는 일조차 생각지 못하고 인격이 황폐화되는 경우가 많다. 한 정신과 의사가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임상경험을 쓴 글에 의하면, 강간피해자는 자신이 폭력의 피해자였음에도 죄의식에 시달린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상황을 자신이 유도한 것처럼 죄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결사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사실이 마치 자기의 불찰이나 자기의 부도덕성 때문인 것으로 여기고 괴로워하고 자학한다고 한다. 어쩌다 소수의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도 사건의 수사 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여성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과 검사, 판사가 모두 2중 성관념에 젖어있는 남자인 경우 더욱 그렇다. 또한 사건조사의 관례가 피해자의 주변평판, 직업, 과거의 성경험, 음주여부 등 강간과 관련없는 사실들을 문제로 삼아 피해자임에도 흡사 죄인취급을 받는 것 등이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피해여성이 2중, 3중의 사회적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다름아닌 남성에게는 영웅호색이라는 말로 미화되어 남성 다움으로, 여성에게는 흠이 있는 여자로 낙인찍는 성의 이중규범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성의 전당 민주광장

광고
문의

711-2708

다.

대구의 강정순씨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경찰관이었고 강정순씨는 양가의 규수가 아닌 다방 여종업원이라는 이유로 인해 재판과정에서 수많은 불이익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었다. 결국 피해신고를 해도 재판과정에서 겪는 인격적 모멸 등으로 인해 여성들은 또 한번의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대부분이 신고를 기피하게 되어 신고된 피해사례는 전체 피해건수에 비취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1987년의 경우 총 5,034건의 강간건수가 집계되었는데 이는 강간발생의 약 2.2%만이 신고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실제 우리나라 강간 발생건수는 약 25만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폭력의 현상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 세계적인 것으로 부각되었다. 서구의 경우를 보면 '직장상사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의 위협에 시달렸다'는 미국의 여성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영국 등 여러나라에서 이를 방지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88년 남녀 고용평등법에 성적 희롱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평등음브즈만'이라는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이 당하는 성적 희롱의 실상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그에 근거한 대항전략들을 책으로 펴낼 정도였다.

81년 11월 25일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여성모임'에서는 '세계

여성성폭력추방의날'이 선포되었고 우리나라 여성들도 이 날을 기념하여 금년부터 성폭력추방에 관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인신매매와 성폭력문제는 지역과 국가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제적인 연계망과 조직에 의해서 더욱 그 범죄성이 심각해지고 있어 벌써부터 국제회의에서의 대책마련이 논의되고 있었다. 지난 12월 14일에는 인신매매와 성폭력 등의 여성의 인권침해에 맞서 국제적 인권활동을 벌이기 위해 아시아 11개국의 여성들이 '아시아여성인권협회의'를 발족시키고 '아시아여성인권선언'을

사회제도, 문화로 인해 파생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발생원인을 제거하는 한편, 제도마련 등 화급을 요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 각 부문에서 실질적인 민주화가 실현되고, 법과 공권력이 도덕성을 회복하고 민생치안 위주로 개혁되어야 한다.

둘째, 정의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하여 소득의 공정분배를 실현해야 한다. 분배구조의 개선과 사회복지의 확대로 상대적 빈곤감이 해소되면 사회적 일탈행위도 줄어들 것이다.

.....

**제도개선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또한 사회단체의 계몽활동만으로 사회
개선을 성취할 수는 없다. 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가
절실하다.**

.....

채택하는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 다.

이것은 여성들 자신이 인신매매와 성폭력으로 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80년대 이후 증가일로에 있는 인신매매와 성폭력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신매매와 성폭력 대책

우리나라의 인신매매와 성폭력의 문제는 앞에서 제기한 것처럼 왜곡된 정치,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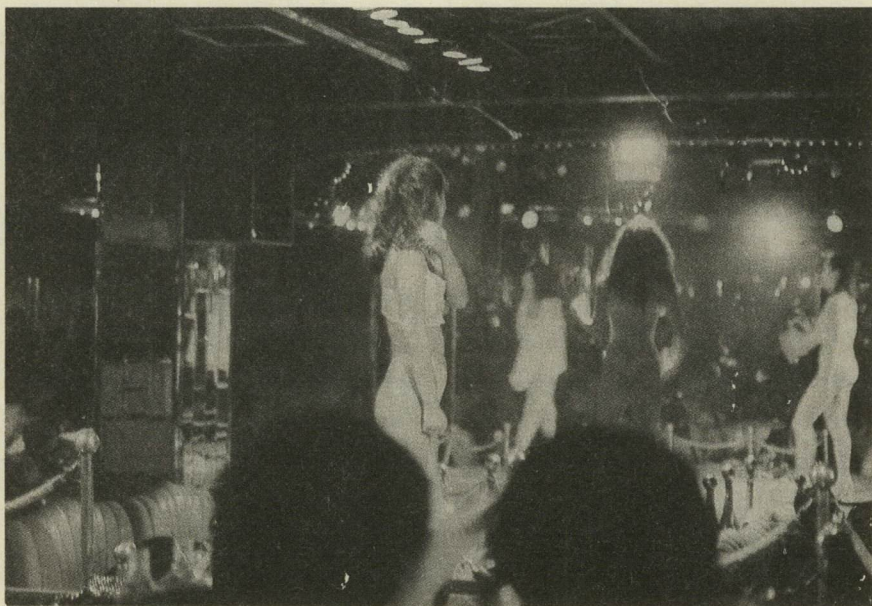
세제, 향락산업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를 강화하여 수요를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네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착과 직업훈련 확대 등을 통하여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평생·평등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여성을 상품화하는 매스미디어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행 성폭력 규정들은 형법, 아동복지법,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산재해 있고, 성폭



• '여성상품화'의 현장 향락업소 : 인신매매 성폭력 등 반인간적 범죄의 산실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력 범죄유형들이 각각 다른 범죄구성 요건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 이들 사이에 연속성이 없고 이들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보호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성의 실제적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고, 고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성계, 법조계, 학계의 판단이다.

이 법에는 ①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② 가정내 폭력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며, ③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따라 범죄를 재구성하고 ④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진술권을 특별규정하고, ⑤ 재판을 비공개로 하며, ⑥ 친고죄적 성격을 폐지 내지 제한적으로 폐지하며, ⑦ 모든 형태의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 구

제, 치료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번째, 성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2중 성관념의 사회통념에서 벗어나 성문제에 있어서 '평등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현단계에서의 최소한의 조치로서 경찰에는 여형사제도를 정규화하고, 검찰청과 법원에는 여검사와 여판사들이 성폭력사건을 전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여덟번째, 인신매매와 성폭력은 준비없이 당하는 피해이다. 법적 대응에 약점을 안고 있는 피해자들을 돕는 것을 비롯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에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과제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에는 '강간 또는 성폭력 위기 센터'가 국가의 공기관으로서 국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성폭력의 신고처리를 비롯
한 업무가 피해자편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후번째,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재조
정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① 매매음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100
여개에 가까운 특정지역은 행정력의 비호
속에 위법하고 있는데 어쩌다 호객행위
또는 호구지책으로 매음을 했을 경우 처벌
을 받는 여성들이 있는 것은 법의 형평성이
문제된다. ② 이 법은 매매음행위를 규제한
법으로서 성을 판 사람이나 산 사람 쌍방에
공평해야할 법인데도 실질적으로 매춘여성
에게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돼 있고
업주나 매음상대인 매음남성에게는 사문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열번째, 현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위반한
여성들이 수용되는 '부녀직업보도소'의 개편
이 절실하다. 현존하고 있는 4개의 부녀직업
보도소는 준구치소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매춘여성들의 전업과 사회적응 능력을 기르
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
다. 앞으로 예상되는 기지촌의 미군상대
매음여성들을 포함한 이들 여성들의 전업과
사회적응을 위해서도 집중적인 예산투입으
로 실질적인 직업훈련과 정신적인 갱생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여성단체, 정당, 정치인이 앞장서야

13대 국회는 누가 평가하더라도 여성에게
있어서는 여성운동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만한 국회였다.

37년간 여성들의 숙원이었던 가족법이
개정되고 남녀고용평등법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할 만큼 내실을 갖도
록 개정하였으며 취업여성들의 탁아문제를
위해 국가예산이 책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마련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제도개선 자체가 해결책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의회기능과 정치의 기능
을 떠나서 사회단체의 계몽활동만으로 사회
의 개선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여성들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불평등처
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여성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
들과 정치권의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 여성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힘있는 정치
세력화가 요구된다. 

◆ 대안을 제시하는 본격시사지 민주광장 ◆

잡지시대의 새 장을 엽니다

- 최고의 지성이 꾸미는 지면
- 간결한 문체
- 균형있는 편집
- 생생한 현장감각으로 당신을 찾아갑니다.

▶ 광고 문의 711-2708